## KOSHA GUIDE

## C - 37 - 2011

- (3) 매설물의 종류, 규격을 표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현장근 로자 모두가 주의할 수 있게 한다.
- (4)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또는 천공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의 깊이 이하 2m 정도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시험굴착을 행하여야 한다.
- (5) 매설물이 굴착 구간내에 노출되는 경우 이설을 원칙으로 하나 이설작업이 곤란한 경우 매달기 방호를 실시한다.
- (6) 매달기 방호 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한다.
- (가) 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버클을 충분히 조인다.
- (나) 완충 목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을 방지하고 로프의 처짐을 수시로 점검한다.
- (7) 노출된 매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한다.
- (8) 매설물 주위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에 주의하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9) 공사현장의 돌발사고를 대비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.
- (10) 공사현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부득이 출입을 요하는 자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11) 연락, 협의사항,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(12) 화기에 취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매설물 주위에서 용접기, 절단기 등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예방 및 비상대응 등 안전 조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.